

국민취업지원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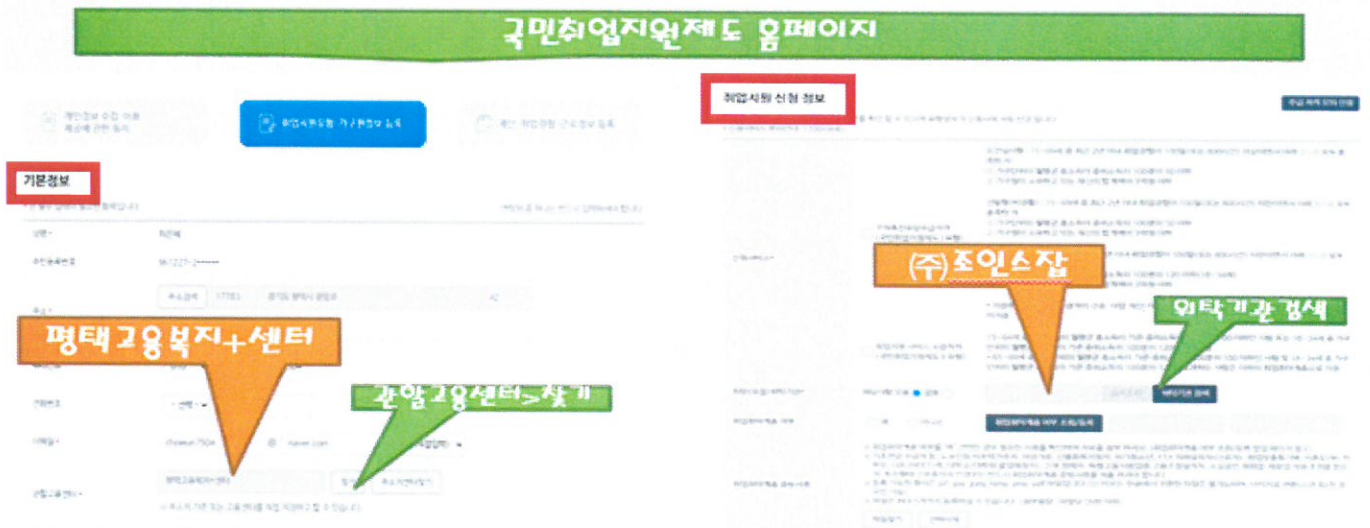
신청 방법

□ 온라인 신청 방법

- (1단계) 워크넷(work.go.kr) 접속 → 회원가입(ONE-ID로 가입)
 - 구직신청 → 구직인증번호(K.....) 확인되면 구직신청 완료
- (2단계)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(work.go.kr/kua)
 - 로그인(ONE-ID) → 참여신청 클릭 → 신청서 작성(기관선택 중요!!!)

중요 포인트 !!!

- 관할 고용센터 선택 - **평택고용센터**
- 민간위탁기관 선택 - **(주)조인스잡**



□ 오프라인 신청 방법

- ◆ 국제대 국제관 1층 잡카페
운영일시 : 월~목 오전 10:00 ~오후 4:00
- ◆ 문의상담 (주)조인스잡 031-663-0084

국민취업지원제도



국민국취업지원제도란

-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영세 자영업자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“한국형 실업부조”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

I 유형	II 유형 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요건심사형)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50%이하 & 재산3억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것 •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(18~34세)중 중위소득 50~120%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저소득층) 중위소득50%초과~60%이하, 특정계층, 월250만원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등 • (청년) 18세 ~ 34세 • (중장년) 중위소득 60~100% 이하

- (소득·재산)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{①신청인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}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※ 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
※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※ (2021년 기준 중위소득)

(단위: 원/월)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50%	913,916	1,544,040	1,991,975	2,438,145	2,878,687	3,314,302	3,748,599
중위소득100%	1,827,831	3,088,079	3,983,950	4,876,290	5,757,373	6,628,603	7,497,198
중위소득120%	2,193,397	3,705,695	4,780,740	5,851,548	6,908,848	7,954,324	8,996,638

- (취업경험) 최근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:

-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
-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
- ③ 사업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
-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
* (특고·프리랜서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□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구분		I 유형			II 유형			
		요건심사형	선발형		저소득층 등		청년	중장년
			청년	비경제활동	저소득층	특정계층		
지원대상	연령	15~69세 (청년: 18~34세, 중장년: 35~69세)						
	소득	중위소득 50%↓	중위소득 120%↓	중위소득 50%↓	중위소득 50~60%↓	×	×	중위소득 60~100%↓
	재산	3억원↓	3억원↓ *고시로규정가능	3억원↓	×			
	취업경험	최근2년 이내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	×	×	×			
지원내용	취업지원서비스	●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등 제공						
*취업시 취업성공 수당지급	소득 지원	구직촉진수당	● 구직활동(월2회)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			×		
		취업활동수당	×			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		
지원기간		● 12개월 (6개월 연장가능)						
구직촉진수당 지원제외자		● 생계급여수급자 ● 실업급여 ·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●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						

○ 특정계층

- 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여성가장 ④ 결혼이민자 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
⑥ 신용회복지원자 ⑦ 위기청소년 ⑧ FTA 피해실직자 ⑨ 건설일용근로자 ⑩ 국가유공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
⑪ 미혼모(부) · 한부모 ⑫ 니트(NEET)족 ⑬ 영세자영업자 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
□ 신청방법

- (신청주체)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- (신청방법) 온라인(www.work.go.kr/kua 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- (신청장소) 관할 고용센터, (주)조인스잡
-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- (제출서류)

***(필수)**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***(필요시 추가서류)**

- ①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- ②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- ③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· 재산 · 취업경험 관련정보
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
신청 · 접수

온라인 : www.work.go.kr/kua
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

오프라인 : 관할 고용센터
(주)조인스잡

문의 상담

고용센터 : 국번없이 1350
(주)조인스잡 : 031-663-0084

